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39
----------	------

2024년 2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년 2월 5일  
다. 회부일 : 2024년 2월 7일  
라. 상정일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2월 26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진만)

###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3. 8. 22.)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사용료의 최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33조, 제90조)

-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5조 관련 별표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1. 9.~11.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 면적기준 마련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 및 권익 확대와, 청사 내 청소근로자 관련 휴게제도의 준수, 근로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
- ※ 대부료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같은 법 제22조 제32조제1항).
- ※ 변상금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9호).

### 나. 개정 주요 내용별 세부내용 검토

#### 1)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33조, 제90조)

- 안 제33조 및 제90조는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 범위(연 6회)를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금액도 현행 ‘연 100만원 초과’에서 ‘연 50만원 초과’로 하향하며,

※ 본 조례에서는 사용료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로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사용료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본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참조)

※ 사용료·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일시납부(「공유재산법」 제22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1항)

- 변상금 분할납부 적용 기준금액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대통령령 제33673호, 2023. 8. 22., 일부개정·시행,

(개정이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며,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일반재산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사용료·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발체)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용료)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 ----- 50만원----- ----- ----- ----- ----- ----- 12회----- -----.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변상금 부과 현황(결산기준) 〉 (단위: 천원)

연 도	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2,876	120,827,156	2,646	110,613,524	230	10,213,632	321	1,614,288
2021	2,878	120,566,136	2,636	108,411,738	242	12,154,398	410	1,699,265
2020	2,041	94,824,897	1,794	79,604,439	247	15,220,458	452	1,093,192
2019	1,370	114,673,602	1,139	104,430,077	231	10,243,525	408	1,029,564
2018	1,386	117,577,111	1,084	92,864,975	302	24,712,136	211	578,579

2)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면적기준 마련(안 별표1)

- 본 개정조례안 별표1의 개정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범적으로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내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면적)을 규정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22-115호, 2022.2.14.)

- (의안번호) 제2022 - 115호
- (의안명)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 39개 국립대학, 2개 국립대학 법인

〈 청사시설 기준표 반영 예시 〉

구분	현행	개정안(예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각 지자체)	(예시규정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나. 부속공간 면적 다. 설비관계 면적 라. 공유면적 (신설)	(예시규정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 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 별표1(서울특별시 본청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규정(신설)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휴게 및 휴게시설을 규정한 법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발체)〉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p> <p>1. 시의 본청 가. ~ 라.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2. 시의회 청사 (표 생략)</p>	<p>[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p> <p>1. 시의 본청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u></p> <p>2. (현행과 같음)</p>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8. 18. 시행], 근로자 휴게 및 휴게 시설 설치 관련 규정(발체) 별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신설)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서는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별표1은 서울특별시 본청과 서울특별시의회 청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 재무국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서울특별시 청사에만 신설 규정이 적용되고 서울특별시의회 청사는 본 개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서울특별시의회 청사에 대해서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 면적을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사권 외의 조직권, 공유재산의 소유권 등 이외의 권한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음.

-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 면적 등은 2010년에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획일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는 ‘자치단체 본청·의회 및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을 신설(2010.8.4.)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특별시의 경우 본청 청사는 127,402㎡, 단체장 집무실은 165.3㎡, 의회 청사는 24,930㎡로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처럼 새로운 시설의 설치 면적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집무실 등 청사 용도별 기준 면적을 충족하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확장 등을 반영한 청사 기준 면적의 확대 등 청사 기준 면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같은 내용의 근거 법령(「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2023.8.22.)과 비교하여 약 7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 ※ 새로운 제도의 적용관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청사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에 대한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마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모든 청사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별표 1 제2호의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도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에 대한 면적 배정 근거를 명시함(안 별표 1 제2호).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639
----------	-------------

제안연월일 : 2024년 2월 2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청사에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에 대한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마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모든 청사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별표 1 제2호의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도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에 대한 면적 배정 근거를 명시함(안 별표 1 제2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시의회 청사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의원연구실	33.15㎡/의원 1인당	3,513.90㎡/106인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석 수×1.5㎡		
		회 의 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 속 공 간	c	사무처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7.2㎡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2㎡	
			직 원	직원 수×2㎡	
			방청객	방청객 수×2㎡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기준 15㎡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p> <p>1. 시의 본청 가. ~ 라. (생략)</p> <p><u>&lt;신설&gt;</u></p> <p>2. 시의회 청사 (표생략)</p>	<p>[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p> <p>1. 시의 본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청소근로자 휴게시설</u> <u>등 타법령상 의무시설</u> <u>의 면적은 해당 법령</u> <u>의 규정에 따른다.</u></p> <p>2. (현행과 같음) (표생략)</p> <p><u>&lt;신설&gt;</u></p>	<p>[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p> <p>1. 시의 본청 가. ~ 라. (개정안과 같음)</p> <p><u>&lt;개정안과 같음&gt;</u></p> <p>2. (개정안과 같음) (표생략)</p> <p>※ <u>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u> <u>타법령상 의무시설의</u> <u>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u> <u>정에 따른다.</u></p>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별표 1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시의회 청사

구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 원 실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의원연구실	33.15㎡/의원 1인당	3,513.90㎡/106인	
회 의 실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석 수×1.5㎡		
	회 의 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 속 공 간	사무처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7.2㎡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	
	휴 게 실	의 원	의원 수×2㎡	
			직원 수×2㎡	
			방청객 수×2㎡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기준 15㎡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 략)</p> <p>② 대부료가 <u>100만원</u>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u></p> <p>2. <u>2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p> <p>3. <u>삭제</u></p> <p>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u></p> <p>2. <u>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u></p> <p>3. <u>1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p> <p>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p>	<p>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50만원</u></p> <p>-----</p> <p>-----</p> <p>-----.</p> <p>1. <u>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u></p> <p>2. <u>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p> <p>3. <u>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u></p> <p>③ -----</p> <p>-----</p> <p>-----</p> <p>-----.</p> <p>1. <u>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u></p> <p>2. <u>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p> <p>3. <u>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u></p> <p>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p> <p>-----</p>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생략)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 라. (생략)

<신설>

2. 시의회 청사

(표생략)

<신설>

-----  
--.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표생략)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